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중증장애인만 응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요건을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합격자는 결원과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

3. 주요내용

- 중증장애인의 장기적인 채용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만 응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 응시요건을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원과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제1항, 안 제23조제2항 신설)
- 중증장애인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60조의5 신설)

4.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을 “제60조의5에 따라 중증장애인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만을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“(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직급)”을“(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60조의5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5(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)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,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,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60조의5(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)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 대상 직무의 종류,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,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937